

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(제3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위반행위가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기간(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)에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하되,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제2호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해당 법조문	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을 한 경우	법 제24조 제1항 제1호	신고 효력상실			
나.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	법 제24조 제1항 제5호	신고효력상실			
다.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	법 제24조 제1항 제6호	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			
1)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)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			신고효력		

망사고 외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		6개월	상실		
3)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하 · 파손 · 붕괴되거나 작 동 또는 기능 불량 등으 로 시설물 또는 제작물 의 주요 기능 · 미관 또 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시켰을 때	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2개월
라.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에 미달한 경우	법 제24조 제 1 항 제 2 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4개월	신고효력 상실
마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4조 제2항				
1)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 나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 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		신고말소			
2) 30일 이상 휴업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 21조제2항제2호에 따 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		경고	신고말소		
바.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 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 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거 나 신고증을 빌려준	법 제24조 제 1 항 제 3 호	영업정지 6개월	신고효력 상실		

경우					
사.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	법 제24조 제 1 항 제 4 호				
1) 금지된 행위를 알선한 경우	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신고효력 상실	
2)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		영업정지 6개월	신고효력 상실		